



보도자료



5월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금융위원회

금융감독원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, 복합금융감독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, 코스닥시장본부, 파생상품시장본부		
책임자	금융위 김학수 과장 (2156-9870) 금감원 양현근 국장 (3145-7580) 박흥찬 국장 (3145-8340) 거래소 황성윤 본부장보(3774-8504) 김재준 본부장보(051-662-2603)	담당자	금융위 김성조 사무관 (2156-9875) 전수한 사무관 (2156-9860) 금감원 김동회 팀장 (3145-7600) 최계명 팀장 (3145-8325) 거래소 최종성 총괄부장(3774-9360) 임재준 총괄부장(051-662-2780)
배 포 일	2011. 5. 19.(목)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~48) 공보실(3145-5788~91) 총 7 매

제 목 :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 마련

I. 추진배경

□ 금융위는 ELW시장의 단기 급성장에 따른 투자과열, 투자자 손실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**ELW시장 건전화 방안***을 마련·시행하였음('10.11월)

* 투자자 교육 의무화, LP평가 강화,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등

○ 同 방안 시행 이후 **ELW시장의 거래대금이 다소 감소**

* 건전화방안 시행 이후 ELW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하향안정(조원):

('10.8월)1.7 → (9월)1.9 → (10월)2.0 → (11월)1.6 → (12월)1.4 → ('11.3월)1.3

* 일평균 이상거래 적출건수:('10.10.1~12.10) 0.84건 → ('10.12.13~'11.2.28) 0.13건

□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,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*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

* 스캘퍼가 증권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이 검찰에서 지적

II. ELW시장 및 주문속도 관련 개선방안

- ◆ 기본예탁금 부과 등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
- ◆ 속도차이와 관련,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,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허용

1 ELW시장 개선방안

1. 투자자보호 제도 강화

①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

- (현행)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증거금외에 기본예탁금*이 부과되고 있으며,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

* 미니금선물·돈육선물 : 500만원, 나머지 파생상품 : 1,500만원

- (개선안)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,500만원을 부과하고,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,500만원을 부과(옵션매수전용 계좌는 제외)

② 극외가격 ELW 발행 제한

- (현황) 일반투자자들이 행사 가능성이 낮은 ELW(극외가격 ELW)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

* 외가격 : 현재 ELW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행사가치가 없는 가격수준
⇒ Put ELW(기초자산 가격 > 권리행사 가격),
Call ELW(기초자산 가격 < 권리행사 가격)

** 패리티(기초자산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의 비율)이 85% 미만인 종목비중 : 11.2% ('11.3월)

- (개선안) 극외가격 ELW*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 개정

* 예) 패리티가 85%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

2.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

① 지수ELW LP별 할증률 상위 현황 공표

- **(현황)** 지수ELW는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되어 거래

< 주요 LP별 지수ELW 할증률* 비교 >

LP명	A	B	C	D	E	F	G	H	I	J
할증률	79%	44%	39%	26%	20%	17%	13%	10%	4%	2%

* 해당 LP의 유동성공급종목 할증률의 단순평균값 ((ELW증가/옵션증가-1)×100)

- **(개선안)** 거래소가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 유도

② 지수ELW 발행조건 강화

- **(현황)** 발행회사별 전환비율*, 최종거래일이 상이하여 지수 ELW와 옵션간 비교가 어려움

* ELW 1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비율

- **(개선안)** 지수ELW의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여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

* 예)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, 전환비율을 100으로 통일

③ 내재변동성 평가 강화

- **(현황)** 내재변동성 항목의 LP평가 반영비율이 낮아(10%) LP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 상존

- **(개선안)**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ELW 가격 형성을 유도

* 대부분의 LP가 높은 점수를 받는 의무이행도 항목은 축소(40점 → 30점)

1. 주문접수 이전단계

□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* 하는 것은 허용

*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하여 전용선을 제공하거나,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 제공 등

※ 외국의 경우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

□ 다만,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

①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(FEP)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

②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 위치(주문시스템 탑재, Trading room 등)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

2. 주문접수 이후단계

□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되어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

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주문접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,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화

* 주문접수 방법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

②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 하고,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(가원장)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③ 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(특선) 배정은 허용*하되 주문프로세스 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**

* 스캘퍼 등에서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

** (예시)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%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고 관리

④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(예: 개인-과천, 스캘퍼-여의도) 차별 방지방안 추진

▶ 원칙적으로 동일 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

▶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조치 요구

3. 증권사 선택정보 제공

□ 주문방법(전용선,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),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

* 증권사가 제공가능한 시스템의 종류, 시스템별 처리 경로, 이용요건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

3 기대효과

- 기본예탁금 도입 등 투자자의 진입절차를 보다 강화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
- ELW 상품을 표준화하고 가격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
-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
 - 증권사의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음

III. 향후계획

-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하되,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3/4분기 이후 시행
 - * 필요시 구체적 사항은 금감원, 거래소, 금투협회간 모범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체화
- 향후, 규정 및 모범기준 등이 마련되면 금감원 검사 및 거래소 회원감리시 동 사항을 중점 점검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 / <http://www.fss.or.kr>

< 붙임 >

증권 주문시스템 구조



① (주문방법) ① 인터넷망(HTS), ② 전용선, ③전화, 메신저 또는 ④ 주문접수 위치상 우위를 활용하는 방식* 등이 있음

* ①증권사 Trading room을 사용하여 근거리망(LAN)을 통해 주문하거나, ②증권사 서버와 같은 공간에 주문시스템을 탑재

** 이러한 주문방법들은 투자자 필요에 의해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

② (증권사 주문처리 단계) 원장을 거쳐 주문 유효성을 체크

* 유효성 체크 항목 : 수량한도, 계좌번호, 매매종목, 보유한도, 증거금, 주문 가능시간, 가격구분(시장가, 주문가등), 호가단위, 주문 수량단위, 상하한가 등 (→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)

** 그간 스캘퍼 등에게는 i)일부 체크항목을 생략하거나, ii)별도원장(가원장)을 거치도록 하여 처리 단계를 간소화해 옴

③ (증권사 전산센터) 전산센터 위치에 따라 증권사에서 KRX까지 회선길이가 달라서 속도차이 발생

* OO증권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위한 전산센터는 과천에, 스캘퍼 등을 위한 전산센터는 여의도에 위치

④ (주문 프로세스 배정)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KRX에 호가를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배정(특선)하는 사례가 있음

* 프로세스간 속도차이는 프로세스별 호가처리 건수에 따라 결정되며 특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선보다 빠른 것은 아님 (예 : 버스 전용차로가 항상 일반차로 보다 빠른 것은 아님)